

# 인권 개념의 전파: 냉전기 인권 개념의 국내 전파 연구

김헌준  
고려대학교

## 요약(초록)

인권이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는 권리이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은 국제정치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다양한 인권조약이 체결되어 국가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기대와 정체성까지 형성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인권은 서구의 보편적 인권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의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 인권은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인권위원회 혹은 인권 전담 부처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가들의 행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 원칙은 이미 개별 국가의 정치적 자율성과 영토적 통일성을 보장하는 주권 원칙과 함께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인 인권의 발전에 대해 냉전 시기의 발전과 동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권 개념이 세계 인권선언(1948)과 함께 국제정치에 등장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미소 간의 대립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분리된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어떠한 작용을 거쳐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특히 인권 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제무대에서 이루어진 정치 과정과 개념의 변화 과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무대에서의 과정이 냉전기 한국에 미친 영향도 동시에 살펴본다. 즉 국제인권 개념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해되었고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변환의 과정을 거쳤는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권 개념이 냉전기에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가 분석한다.

## 목차

1. 서론
2. 인권 개념의 국제적 발전 과정 연구
3. 냉전기 국제질서 하에서의 인권을 둘러싼 정치 과정 분석
4. 한국에서의 인권 개념의 수용과 발전 과정
5. 인권의 국제적 발전 과정과 한국적 발전 과정의 비교 분석
6. 결론

## 주요 내용

## 1. 서론

인권이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는 권리(the rights one has simply because one is human being)'라고 할 수 있다(Donnely 2003). 이 권리는 특수한 계약이나 관계 혹은 조건 등에 구애받는 특수한 권리(special rights)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일반적 권리(general rights)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universalistic)이다. 인권은 그 권리가 각각 개인에게 주어지는가 아니면 개인의 모임인 집단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아직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한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인권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밝혀냈다. 현재 인권이 어떠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인권이란 가치와 규범이 어떠한 연원을 갖고 있는지 또한 관심 있게 보아왔다(Moyn 2010; Ishay 2008).

인권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만행이 인류에게 준 충격에 대응하여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후 국제인권규범은 명목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에 그쳤던 인권선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법제화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또한, 단순한 법제화나 제도화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선언된 가치와 기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는 과정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은 두 가지 형태의 운동과 맞물리는데, 하나는 집단살해죄(genocide,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난민법의 탄생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70년대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그리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 채택되면서 그 절정기에 이른다. 결국 인권의 중요성은 현재 유엔 체제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며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다양한 국제인권규약이 체결되어 국가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기대와 정체성까지 형성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인권은 서구의 보편적 인권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의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 인권은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인권위원회 혹은 인권 부처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가들의 행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 원칙은 이미 개별국가의 정치적 자율성과 영토적 통일성을 보장하는 주권 원칙과 함께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국가승인을 위한 유럽공동체 선언이나 2005년 이후 등장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국제규범 등은 인권이 주권과 밀접하게 결합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급속한 확산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해 다음 두 가지 정도의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권규범이 확산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학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의 형성 과정 등을 분석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확산되었는가하는 문제에 집중한다(Morsink 1999; Kaufmann and Pape 1999; Moravcsik 2000; Ishay 2008; Moyn 2010). 둘째, 국제인권규범의 확산이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국제인권규범이 개별 국가, 특히 인권침해를 일삼는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문제를 연구했다. 대표적인 연구로 국제인권규범 효과의 나선형모델(spiral model)을 제시한 리스(Thomas Risse), 롱(Stephen C. Ropp), 시킨크(Kathryn Sikkink)의 연구가 있다(Risse et al. 1999; 2013). 인권규범의 확산이라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 효과라는 연구 프로그램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한편 또한 엄밀히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 2. 인권 개념의 국제적 발전 과정 연구

국제적 인권 개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가? 인권의 국제적 발전은 두 개의 과정을 통해 발전함 (1)

1. 구조: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codification, legalization)
2. 과정: 상호 간 행동과 관행 등 실행(practice)을 통해 과정(process)이 됨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다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뉨 (2)

1. 제도화(standard setting)
2. 조사(investigation)
3. 책무(accountability)

제도화는 (1)의 접근법 중에서 구조와 밀접히 연결됨. 즉,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임. 이는 대부분의 인권을 포함한 규범이 당위성을 지니고 있어 그 당위성이 표준이나 기준으로 되어가는 과정임. 이 과정에서 문자화(codification), 법제화(legalization), 그리고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중요함.

하지만, 제도화는 반드시 현실적인 적용 과정과 조우하게 되고 이럴 경우, 조사와 책무 과정이 중요해짐. 조사와 책무 과정은 (1)에서 나눈 바에 따르면 '과정'에 해당됨.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면 조사와 책무 과정으로 나뉘는 것임.

우선, 책무 과정은 실질적인 개념의 현실화 과정임. 즉 기준으로 남아있던 개념이 현실과 조우하며 항상 문제에 접함. (즉, 기준은 명확한데 현실은 항상 그렇게 분명하게 피어나 적합/부적합 혹은 위배/준수가 나뉘지 않음.) 이러한 이유에서 규범의 compliance, enforcement, effectiveness 등의 문제가 나오고 개념의 외연/내포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들이 문제시 됨. (대표적인 경우가 인권 개념의 경우, 인권 개념이 아닌 것, 즉 인권 침해 현상임). 이럴 경우, 당사자를 개념과 걸맞은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

로 책무성(accountability)적 요소임.

하지만, 기준과 책무성을 잇는 과정은 그리 수월한 과정이 아님. 따라서 필요한 과정이 개념의 범위를 확정하고 현실이 과연 그러한 개념의 범위를 넘었는가 살펴보는 조사(investigation, evaluation)의 과정이다. 이는 현실에서의 정보의 수집, 그리고 모여진 정보와 개념의 외연/내포간의 관례의 분석, 그리고 결론에의 도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다.

인권 개념의 전파를 파악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제도화(구조)에 집중하여 진행됨. 하지만, 이것을 바서는 실질적인 전파를 보기 힘들.

1990년대까지 국제인권규범의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첫 번째 과정인 인권 표준의 설정에 맞추어져 있었다(Morsink 1999; Dunne and Wheeler 1999).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상당 수준 법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과 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비교적 적고 그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국제인권규범이 개별 국가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국제적인 규범체계로서의 인권 규범의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규범의 법제화와 함께 동시다발적인 조사 및 책임성 추구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전화기정의의 발달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적 평판(reputation) 혹은 정책적 책임에만 초점을 두던 관행을 넘어서 가해자와 정치지도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사법적 책임을 묻는 형태의 강력한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다른 두 과정, 즉 조사와 책임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인권규범의 준수(compliance), 강제(enforcement), 혹은 인권규범의 효과(effectiveness)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Simmons 2009; Sikkink 2011; Risse et al. 2013; Hafner-Burton 2013).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의 준수 및 강제 측면은 개별 국가가 추진하는 전환기정의에 잘 드러난다는 점이다.

개념 전파는 일종의 아이디어(관념)의 전파이고 이는 우선적으로 제도화의 전파에 집중함.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과정 혹은 관행의 전파이고 이것이 보다 깊이 있는 전파가 되었음을 나타냄.

이를 흔히 세대 별 규범의 전파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음

- 1세대 국제규범/개념의 일방적인 전파, 혹은 국제에서의 국내로의 전파 강조 (Finnemore and Sikkink)
- 2세대 국제규범/개념을 이끌어 들어는 국내적 요인에 대한 강조 (Davis and Cortell)
- 3세대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봄 (Acharya의 localization 개념과 국제와 국내의 상호 작용 강조)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 모두 제도화/구조에 집중된 연구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인권 개념의 실천/실행/과정을 강조하는 전파 과정 연구 필요.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 것이 최근에 인권 개념에서 강조되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요소임.

전환기정의란 “과거의 억압적 정권이 행한 만행에 대응하기 위해 일어난 다양한 정치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Teitel 2003, 69). 여기서 일컫는 만행(atrocities)이란 대부분 군사독재, 권위주의, 파시즘 등 폭압적 정권의 군인, 경찰, 검찰, 혹은 정보기관원에 의해 행해진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의미하고 주로 초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 자의적 구금, 고문, 실종 사건을 포함한다. 국제규범으로서의 전환기정의에는 과거 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 혹은 전쟁 및 내전 중에 가해진 인권침해가 민주화 및 평화협정 이후 새로운 정부에 의해 법적,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Sikkink 2011; Sikkink and Kim 2013).

전환기정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 행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책 방안을 포괄한다(Teitel 2000). 또한, 평화, 공존, 화해, 국가적 일체성, 미래의 잔혹 행위에 대한 예방, 배상, 피해자의 명예 회복, 개인적 만족과 치유 등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지닌다. 전환기정의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환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있어왔다. 지난 30년 동안 전환기정의의 실행과 이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며 그 외연이 상당히 확장되었다. 하지만, 보통 전환기정의를 이야기할 때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전환기정의가 있기 위해서 해당 국가는 정치적 전환기를 거쳐야 한다. 둘째, 대통령, 총리, 의회, 법정, 검찰 기구등과 같이 전환기 이후 설립된 적법하고 책임성 있는 기구에 의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환기정의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의 형태로 실현되며 이러한 정책에는 해석적(interpretive), 응보적(retributive), 분배적(distributive), 교정적(rectificatory) 요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한다.

첫째, 해석적 요소는 인권침해에 대해 기존에 은폐되었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 이를 정부의 공식 문서 혹은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응보적 요소는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색출하여 민사 혹은 형사상의 불이익을 안기고 저지른 인권범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셋째, 분배적 요소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으로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기회비용에 대해 금전적으로 혹은 여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물적 배상 및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교정적 요소는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비물질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복권, 사면 등과 같은 정치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고 복직, 복학, 명예회복 등 사회적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적 조치가 전환기정의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 더불어 전환기정의는 단순히 과거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과거지향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화해, 공존, 치유, 인권침해 예방 등을 이루어내려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추구한다(Fletcher and Weinstein 2002).

전환기정의의 확산은 국제인권규범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제인권규범의 확산은 인권 표준의 설정(standard-setting),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추구라는 세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첫째, 국제사회는 세계 인권선언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강제적인 국제적 인권보호의 표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표준은 주로 법제화(legalization)라는 방식으로 형성되며 2017년 현재에도 다양한 인권분야에서 새로운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다. 둘째, 인권보호의 표준이 설정이 되면 이러한 표준은

불완전한 현실과 조우하며 공존하게 된다. 이때 설정된 인권표준은 명쾌하고 확실하지만 이러한 표준이 적용되는 현실은 항상 애매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 혹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과연 설정된 표준에 부합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실에서는 복잡성과 모호성 때문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권표준에 도전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한 발생한다. 이 경우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혹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수반된다.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은 세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달성된다. 하지만 조사 및 책임 과정은 존재하는 인권표준을 일방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사 혹은 책임 과정은 역으로 기존의 인권표준의 모호성, 문제점 및 한계 등을 밝혀내어 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인권표준을 만드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 3. 냉전기 국제질서 하에서의 인권을 둘러싼 정치 과정 분석

Rosemary Foot. "The Cold War and human rights"

R. J. Vincent. 1984.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냉전 이전의 인권 논의 (세계인권선언을 둘러싼 갈등)

- 유엔 헌장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넣는 과정 - 서문과 68조 (이를 기반으로 경제사회이사회 내에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생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함)

특히, 미중 양국은 이미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될 당시부터 갈등이 있어 왔다. 미국과 영국은 2차 대전 중에는 인권의 증진을 전쟁의 목표로 설정하고 옹호했지만,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국내에서 인권과 주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sup>1)</sup> 특히 미국의 경우, 인권보다는 주권을 앞세우는 강경파가 우세해, 국무부에서는 덤바턴 오크스 (Dumbarton Oaks) 회의에 참여하는 대표들에게 인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오히려, 당시 중국은 이 회의에서 인종 차별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를 원했고, 그런 점에서 인권을 꼭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인권을 둘러싼 갈등

- 냉전 초기부터 인권에 대한 미소 간 갈등과 경쟁 존재 (이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 인권 논의의 진행이 저해)
- 이런 이유에서 인권 규범 자체만이 아닌 다른 유엔의 기구나 노력들도 정치화 (예를 들어, UNHCR 같은 기구도 초기에는 미국의 이해관계 대변한다고 소련에게 비판받음 - 공산권 국가를 벗어나는 난민에게 호의적이라고 주장)
- 미국: 과테말라의 사례 - 1954년 미국의 개입 (좌파 정권의 축출 - 향후 30년 동안 개입)
- 이러한 방법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 이 과정에서 우파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일어나고 미국은 이를 묵인
- 중공: 한국전 개입, 소련: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개입 - 국내 국외의 사찰, 구속 증가

1) Paul Gordon Laure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sion Seen*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8).

- 중공과 소련도 외국에 개입함에 있어 인권 문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지원 (이라크 후세인, 기니, 말리,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

#### 갈등 사례 1.

미중 간 인권 갈등은 한반도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 생화학무기의 사용 및 민간인 대량살상 등의 문제로 대립하였다. 중국은 1951년 위생부부장이 국제적십자연맹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엔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십자연맹에 특별조사팀을 요구했고, 이듬해 양국 외교부 수장의 상호 비난 성명까지 나오게 된다. 저우언라이 외교부부장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생물학 무기를 이용해서 중국 인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미국을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애치슨 국무장관은 “유엔군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모든 종류의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였다. 이 문제는 이듬해 국제적십자 연맹이 생화학무기 사용의 증거를 찾지 못해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 사례는 향후 양국 간 인권규범을 둘러싼 갈등의 전조를 보여준다.

#### 갈등 사례 2.

1960년대에도 미국과 중국은 인권규범에서 갈등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마오쩌둥의 1968년 미국의 시민권 운동 지지 사건이다. 마오쩌둥은 이 운동이 한창이던 1968년 4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에서 차별받는 유색인종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흔히 미중관계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 논할 때 미국이 공격을 하고, 중국이 방어를 하는 입장과 상반되는 역사적 경험이라는 사실 때문에 흥미롭다.

#### 하지만 1970년대 긍정적인 발전

- 국제권리장전 = UDHR + ICCPR (정치, 시민적 권리) + ICESCR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 세계인권선언 등장 이후 NGO나 국내 기구, 다른 국가, 개인들이 이 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함 (인권 NGO들의 등장과 그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증가,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 국가들 또한 이를 이용해 인종편견, 차별, 식민주의에 맞섬, 유럽의 국가들도 선진적으로 인권 향상에 힘씀)
- 국제적 인권의 확산은 미국과 소련의 국내 인권 향상에도 기여
  - 미국의 인종문제에 대한 중국, 인도 등 국가들의 비난, 특히 이 문제가 베트남전 반전 운동과 연계되어 미국의 대외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지원하는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했고 이것이 연례 인권보고서의 탄생으로 이어짐
  - 소련에서도 시민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함

#### 헬싱키 프로세스

- 헬싱키프로세스(1973)의 중요성: 공산권 국가들의 시민사회나 개혁가들에게 큰 기회
- 원래의 목적은 유럽에서의 동서 국가 간 영토적, 이념적 분리를 안정화하려는 것임. 하지만 이 중에서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가 있었음

- 동구권은 이것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조약을 받아들였고 또한 조문을 공개함
- 각종 동구권 국내의 자유화 요구 세력들이 결집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서구의 인권단체와 연결이 됨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다른 모습을 보임.

미국과 중국은 1979년 공식 수교 이후 10여 년 동안 전반적으로 갈등이 잦아드는 시기를 맞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밀월관계는 1986년 이후 인권분야에서부터 점차 잡음이 나오게 된다. 1986년 미 의회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고, 예를 들어, 1986년 6월 2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에 대해 정치권과 인권을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의회 외교위원회도 같은 해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듬해 미국 내 중국 연구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진보지식인 탄압에 대한 비판 성명이 나온다. 이에 대해 덩샤오핑은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중국은 개방 정책을 지속할 것이나 완전한 서구화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미국 하원에서 티베트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라고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

이러한 미중 간 갈등은 1989년 천안문사태로 그 정점을 찍는다. 이미 양국은 5월 이전에도 티베트에서의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진압에 관해 상호 비난성명을 주고받았다. 1989년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다음 달, 미 국무부는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무력진압을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국내 문제이며 외국 정부, 조직, 개인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덩샤오핑의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천안문사태에서 미국은 1968년 마오쩌둥이 그랬던 것처럼, 부시 대통령이 시위대를 지지하며 정부의 무력진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곧이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 동결, 미중 국방회담 연기, 모든 고위급 접촉 중단,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중국에 대한 신규 차관 중단하는 제재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후 미중관계의 핵심은 중국의 최혜국대우를 인권 상황과 연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부시 행정부에서도 의회와 행정부 간에 갈등이 있었던 문제이고,<sup>2)</sup> 공식적으로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호 연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이 난다.<sup>3)</sup>

### 냉전의 종식과 인권

- 동구권 및 소련 국가에서 망명과 고르바초프의 등장
- 1986년 '신사고(new thinking)'의 등장 - 반국가세력에 대한 체포 줄고 동유럽 국가에게도 자율권이 생김 - 동구권 국가 간,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간섭이 없어짐

2)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 인권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중국이 계엄령을 해제하자 퀘일 부통령은 "계엄령 해제 결정이 인권을 향한 진전"이라는 긍정적 판단이 담긴 주장을 하였고, 3월 2일 부시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인권 상황과 연계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혜국 대우를 1년간 더 연장하기도 하였다.

3) 1991년 중국 최혜국 대우 갱신 조건으로 인권 상황의 개선을 포함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이듬해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에 어떠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인권 문제와 최혜국 대우를 별개의 문제로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 4. 한국에서의 인권 개념의 수용과 발전 과정

인권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근대 역사에 있어 한국은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 4.19혁명, 제2공화국, 5.16쿠데타와 군사독재, 박정희의 암살과 서울의 봄, 12.12쿠데타와 권위주의 정권, 1987년의 민주화를 겪으며 격동의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권 및 한국전쟁 중에 자행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특별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등의 설립과 함께 정점에 이른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적어도 열 개 이상의 과거사 관련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였으며, 이는 세계의 어느 국가와 비교해볼 때 그 수와 활동에 있어서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Dancy et al. 2010).

한국의 사례는 과거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파된 인권 개념의 효과와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예와 같이 하나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한국전쟁 중, 4.19혁명 직후,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등 다양한 시기에 걸쳐 있어왔기 때문에 전환기정의의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과까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란과 극우세력의 방해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도가 좌초되는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인권 개념 전파의 다양한 면모를 관측할 수 있다.

#### 5. 인권의 국제적 발전 과정과 한국적 발전 과정의 비교 분석

#### 6. 결론

##### 해결해야 할 이슈

##### 1. 시기 구분

세 층위에서의 개념 변화와 적용 연구

1. 국제체제: 미소냉전의 전개
2. (분단체제: 남북 간 냉전의 전개)
3. 국내체제: 남북한 근대국가 사회 건설

각각의 시기가 다름 - 미소는 1945에서 1989라면, 분단 체제는 1945에서 현재까지이고, 국내 체제는 그 근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1948에서 1987로 할 수도 있음. 서로 다른 시

간의 스펙트럼에 존재함. 그러므로 물리적인 시간과 실제 영향을 주고받는 시간과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접근법: 특정 사건을 둘러싼 논쟁 및 논의의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매크로하게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트렌드를 볼 것인가의 문제

한국에서 냉전기 인권 개념의 도입과 발전을 연구하는 적합한 후보 사건들

- (1) 제주 4.3 사건
-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 (3) (이승만 정권의 억압과 4.19혁명)
- (4) (박정희 정권의 억압)
- (5) 광주 민주화운동
- (6) (전두환 정권의 인권 상황)

- 여기서 (1), (2), (5)는 급성 상황이라는 점 vs. (3), (4), (6)은 만성(chronic) 인권 침해
- (1), (2)를 보는 것은 냉전 초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3)~(6)은 각각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나 냉전 전반기에 걸친 변화를 보지는 못함